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을 태극 문양의 상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부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 제목 외의 부분
및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각각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
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명패의 모양 및 규격(제4조 관련)

1. 명패의 모양



2. 명패의 규격

가. 전체 크기: 85 × 185mm

나. 휘장 크기: 121.5mm

다. 표기사항 크기

1) OO유공자의 집: 10.8mm

2) 국가상징 및 국가보훈부: 10.5mm

라. 소재: (앞면) 스테인리스 스틸
(뒷면) 아크릴

마. 부착방식: 양면테이프 또는 그에 준하는 부착방식

바. 제작방법: 휘장 부분 입체가공

사. 글자 및 배경색상: 파란색

아. 태극색상: 파란색 및 빨간색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부착 대상) <u>국가보훈처장</u>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(이하 “명패”라 한다)를 부착한다. 1. ~ 4. (생략)	제2조(부착 대상) <u>국가보훈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) ① <u>국가보훈처장</u> 은 명패의 제작·부착·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<u>국가보훈처장</u> 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	제5조(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) ① <u>국가보훈부장관</u> --- ----- ----- ---.
제6조(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) <u>국가보훈처장</u> 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,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	제6조(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) <u>국가보훈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.
제7조(명패 부착 관리 대장) <u>국가보훈처장</u> 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	제7조(명패 부착 관리 대장) <u>국가보훈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